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(岩錐) 등 지질·광물 정보의 보관·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(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